

● 제289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 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2019. 8. 30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

의안번호 908

#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출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 출 일 : 2019. 8. 7.
- 다. 회 부 일 : 2019. 8. 13.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가. 제안이유

- 조직개편('19. 1. 1.)에 따른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(이하 “지원 시설”)의 주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정책대상의 명확화를 위하여 지원시설 중 청소년건강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

##### 나. 주요내용

- 지원시설의 주관부서를 여성권익담당관으로 변경하고, 지원시설 중 청소년건강센터의 명칭을 “십대여성건강센터”로 변경함 (안 별표)

- 지원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「지방재정법」 등 상위법령을 부적합하게 준용하고 있는 조문들을 정비함(안 제7조 및 제9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

다. 기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 참조

(2) 입법예고(2019. 5. 9. ~ 5. 29) 결과: 의견있음(별도 첨부 참조)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별도 첨부 참조

## 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 1 개정안의 취지

- 본 조례안은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중 ‘청소년건강센터’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원대상 및 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, 집행부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, 그 입법취지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.

### 2 주요사항 검토

□ 시설 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사항 반영 (안 별표1)

#### 1) 시설 명칭 변경

- 조례안(안 별표1)은 현행 조례<sup>1)</sup>에서 규정한 “위기 십대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검진, 질병치료,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, 성·건강 교육 및 심리·정서지원 등”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‘청소년십대건강센터’의 명칭을 ‘십대여성건강센터’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.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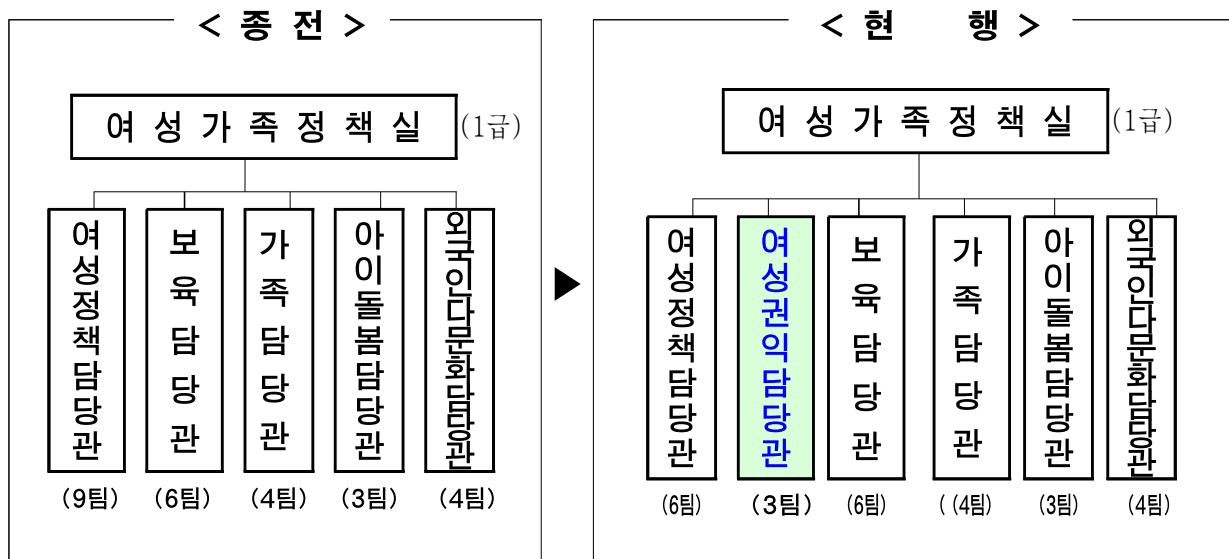
1) 「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」제4조(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)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·교육·자립과 관련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.

4. 위기 십대여성의 성·건강 지원을 위한 일반의약품 지원, 지역의료 돌봄체계 구축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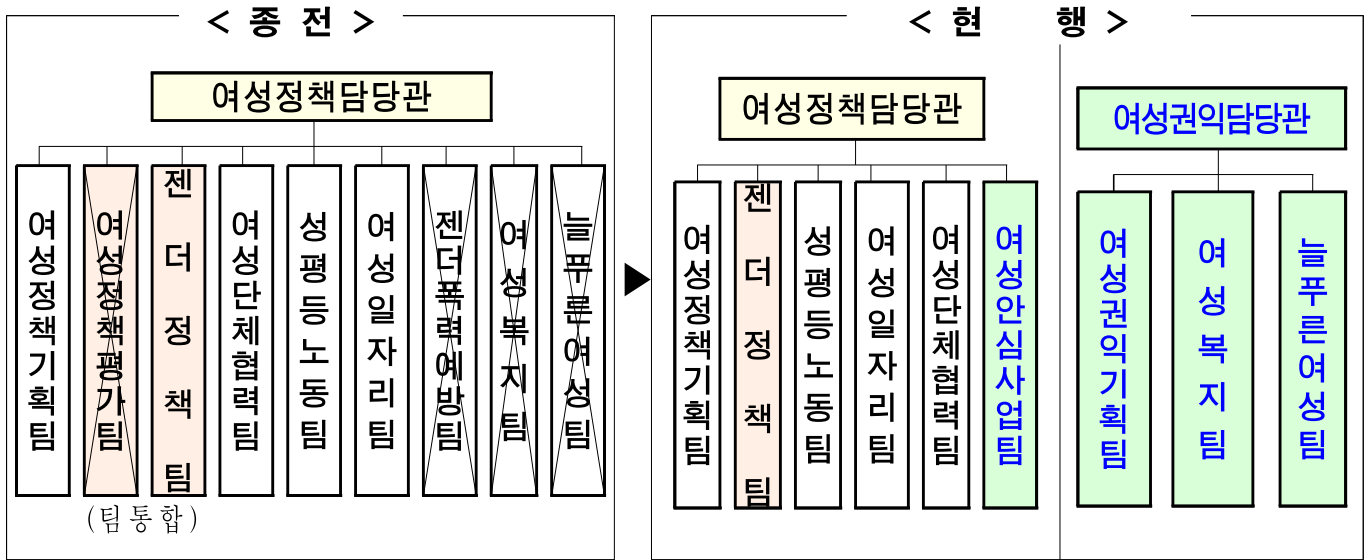
- ‘청소녀’가 공식적인 행정용어에 부적합하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‘청소녀’ 대신 ‘십대여성’이라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해석상의 불명확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## 2) 조직개편 사항 반영

- 민선7기 2단계 조직개편 계획(조직담당관-11121호, 2018.9.21.)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젠더폭력 시책 총괄 부서로 여성권익담당관이 신설(2019.1.1.)된 바 있음.



- 위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에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십대여성 지원 시설을 담당하던 늘푸른여성팀이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이관된 바,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십대여성 지원 시설 주관부서를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음.



□ 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 (안 제7조 제2~4항)

- 개정안(안 제7조제2항 하단)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원시설의 예산·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「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」 및 여성가족부의 「여성·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」, 집행부의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」을 준용하도록 한 바, 예산·회계를 포함한 관리·운영, 인사, 재산·물품관리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,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, 보수, 경력인정 범위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것<sup>2)</sup>을 완화하여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인사 채용에 있어 보다 탄력적인 집행과 관리가 가능하도록

2) 「서울특별시 위기 심대여성 지원 조례」 제7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④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, 보수, 경력인정 범위 등은 시장이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.

록 하였음.

- 다만 조례 제정 이후, 2년이 지나도록 조례에서 따로 정하도록 한 규칙(현행 조례 제7조제4항)을 만들지 않고 금번 개정으로 피해나가는 것은 집행부의 조례집행에 대한 무사안일하고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.

□ 시설에 대한 지도·감독 (안 제9조)

- 현행 조례(제9조제2항)은 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·부당한 사항,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·시정명령·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음
-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 시설은 민간위탁 시설로서 보조금이 아닌 민간위탁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, “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”는 동 시설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, 개정안(안 제9조 제2항)은 보조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인 바,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현행	개정안
제9조(지도·감독) ① (생략)	제9조(지도·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·부당한 사항,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<u>경고·시정명령·보조금 교부결</u>	② ----- ----- ----- <u>경고·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</u>

현행	개정안
<p><u>정 취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시장은 <u>제7조에 따른 위탁 운영에 있어</u> 수탁자가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<u>지원 예산을 교부받거나, 지원받은 예산을</u>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진행 또는 종료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<u>교부한 예산</u>을 환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지원예산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8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<u>제7조제1항 후단과 관련하여</u> 수탁자가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<u>사업비를 지원받거나, 지원받은 사업비를</u>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진행 또는 종료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<u>해당 사업비</u>를 환수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삭 제&gt;</p>

- 또한 개정안(안 제9조제3항)은 민간위탁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환수조치의 대상이 ‘민간위탁금’이 아닌 ‘보조금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“사업비”로 명시하여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음.



### 3 종합 검토 의견

- 본 개정안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 시설의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, 집행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 주관부서를 바꾸는 것으로,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앞으로 조례에 규정되는 명칭 등의 경우, 이해하기 쉽고 해석상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